



www.angelscare.co.kr

(A) 천사의방문행복나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제10068호]한 “표준약관 이용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제2025-247호 / '2026.1.1.일 시행]한 이용금액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주요사항 안내

센터 사업목적		우리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 범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5등급(치매특별 등급자)인정자는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 하거나 또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자택 내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구비서류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 이용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우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계약목적		우리 센터는 수급자의 일상 수단적 활동 수행에 필요한 생활환경 제공과 신체 및 개인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계약기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등급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연장, 재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족·친족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신원 인수인)과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및 횟수		①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30분 단위로 일 이용시간과 주간 이용 횟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②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이용 횟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시간(최대 1시간 이내)과 월간 이용 횟수(최대 월 4회 이내)를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추가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서비스 이용료 청구 및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라 매월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 별 월 사용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며, 2026년도 고시 수가 내용은 [별표1] 아래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③ 서비스 이용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이용 세부내역서와 함께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는 익월 말일까지 센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료의 변경 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비스 이용료 수가의 변경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변경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수급자의 이용료 감경기준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 호, 시행 2021.12.01.)규정에 따라 공단에서 심사·결정하며, 센터는 공단의 감경내용에 따라 이용료를 청구합니다. ③ 수가가 변경된 경우, 센터는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서비스 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서비스 제공 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다만,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⑥ 이용 상담, 지역사회와의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이용자 (신원인 수인의 권리)의 의무	신원인수 인 정의	“신원인수인”이라 함은 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수급자”를 대신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하는 수급자의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을 말합니다.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한 알 권리 ②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상세 내역 요청 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 요청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이용자 비용 부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신병 이상 등 신원사항 변경 시 즉시 센터통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다른 법적대리인 선정·통보 ⑤ 수급자의 사망, 병원 입·퇴원, 요양보호시설 입·퇴소 시 통보
배상책임		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배상을 위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면책범위		<p>우리 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가 갑작스런 발작 증세로 입원 또는 사망 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 ③ 병원, 보호자 부주의 등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시

	④ 기타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p>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과 센터는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p> <p>①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p> <p>② 센터의 직원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p> <p>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신원인수인이 급여를 제공받는 센터를 변경하고자 할 때. 다만 센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분명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함.</p>

[별표 1]

방문요양·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 12. 30.).시행일 '2026.1.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따릅니다.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및 기타 의료수급권자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및 기타 의료수급권자
30분 이상	17,450	2,618	1,571	1,047	150분 이상	50,640	7,596	4,558	3,038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19	180분 이상	57,020	8,553	5,132	3,421
90분 이상	34,120	5,118	3,071	2,047	210분 이상	63,530	9,530	5,718	3,812
120분 이상	43,430	6,515	3,909	2,606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5

※ 제20조1항,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 '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및 기타 의료수급권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8,990	13,349	8,009	5,339
	가정 내 목욕	80,230	12,035	7,221	4,814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0,100	7,515	4,509	3,006

※제26조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재가급여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 일반 수급자	85.0%	15.0%
✓ 기초 수급권자	100 %	00.0%
✓ 의료 수급권자	94.0%	6.0%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최귀난치성·만성질환자)	① 94.0%	① 6.0%
✓ 저 소득층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② 91.0%	② 9.0%

※ 차상위 및 저 소득층 감경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283 호, 시행 2021.12.01.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이라 공단에서 심사하여 차등 감경 적용되며, 수급자의 감경 비율(%) 확인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참고하십시오.

